

1. 개정이유

주택도시기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연직 직위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)
- 나.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연직 직위 명칭 변경 및 단순 오기 사항 반영(안 제20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, 제24조, 제2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

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리스크관리단장”을 “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”으로 하고,
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23조제4항 중 “리스크관리단장”을 “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”으로 하고,
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24조 전단 중 “위험관리위원회”를 “성과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7조 전단 중 “위험관리위원회”를 “대체투자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) ① ~ ③ (생략)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<u>리스크관리단장</u> 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2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 <u>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</u> ---. ⑤ 위촉직 위원은 <u>자산운용위원회</u>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2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) ① ~ ③ (생략)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<u>리스크관리단장</u> 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2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 <u>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</u> ---. ⑤ 위촉직 위원은 <u>자산운용위원회</u>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24조(준용규정)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의 규정은 <u>위험관리위원회</u>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운용심의회” 및 “자산운용위원회”는 “성과평가위원회”로 본다.	제24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 <u>성과평가위원회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
제27조(준용규정)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의 규정은 <u>위험관리위원회</u>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운용심의회” 및 “자산운용위원회”는 “대체투자위원회”로 본다.	제27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 <u>대체투자위원회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